

충청북도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가. 제출일자 : 1992. 12. 14

나. 회부일자 : 1992. 12. 14

3. 제안이유

- 충청북도 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가 '92. 12. 31자로 시한이 만료되어
- 동조례의 존치기간 시한연장이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승인(지기 01210 - 897)됨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임.

4. 주요골자

- 충청북도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 시한연장

연	행	개	정
이	조례는 1992. 12. 31일	폐지한다.	이 조례는 1995. 12. 31일
			폐지한다.

5. 검토의견

충청북도 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동조례의 존치기간이 '92. 12. 31자로 시한 만료되는 바, 존치기간의 시한연장이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존치기간을 '95. 12. 31로 연장하는것으로 승인
하여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6. 별 첨

- 충청북도 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 충청북도 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